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61

발의연월일: 2021. 9. 14.

발 의 자:김상훈·박대출·지성호

김희국 · 김승수 · 서정숙

이명수 · 추경호 · 권성동

김예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런데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(안 제77조 및 제77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7조의2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	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
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다	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	
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	
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	
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	
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	
득한 토지등을 <u>2021년 12월 31</u>	<u>2024년 12월 31</u>
<u>일</u>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	<u>일</u>
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	
득세의 100분의 10[토지등의	
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	
서는 100분의 15로 하되, 「공	
공주택 특별법」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	
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	
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	
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	
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	
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	

경우에는 100분의 40)]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⑨ (생 략)

제77조의2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) ① 거주자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 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 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 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 성한 토지로 보상(이하 이 조 에서 "대토보상"이라 한다)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
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⑨ (현행과 같음)	
제77조의2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	
소득세 과세특례) ①	
20241 1992 2162	
<u>2024년 12월 31일</u> -	